

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6. 5.(토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65호

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
2. 발령안 2부. 끝.

## 법 무 담 당 관

(제3안)

수신 : 농수산유통과장

제목 : 예규 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폐지침을 서울특별시법제사  
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  
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6. 5.(토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65호

첨부 : 발령목록 1부. 끝.



## 서울특별시장

(전결 기획예산실장 탁병오)

# 예 규 발 령 목 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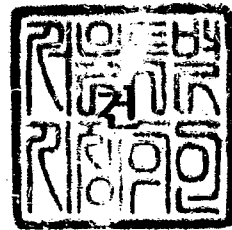
□ 총 1건 (폐지)

연 번	법 규 명	번 호	주 관 부 서
1	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 폐지지침	제665호	농수산유통과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

폐지지침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     고



1999년 6월 5일

#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폐지지침안

## 1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

※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 (생략)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.

기획예산실

라. 규제심사 :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

##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폐지지침안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은 이를 폐지한다

### 부 칙



- ①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용자금에 대한 경과조치)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용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일까지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관리한다.

# 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3707-9395~6 / 전송 3707-9399  
 처리부서 : 농수산유통과(서소문별관 9층) 과장 김경중 / 담당 최종환

문서번호 농유 51000 - 1099

시행일자 1999. 5. 20.

(경유)

수신 법무담당관

참조

선결	법무담당관 <i>김경중</i>	지시	
접	일자	결재·공람	법제담당사무관 <i>구영</i>
	시간		행정지원담당사무관 <i>김기호</i>
수	번호		송부담당사무관
처리과			
담당자			

제목 : 예규 폐지안 발령의뢰

법제심사담당사무관 *이영민*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 예규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예규폐지를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폐지지침안 5부. 끝.

*김경중*  
 농수산유통과장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/전화 3707-9395~6/전송 3707-9399  
농수산유통과 과장 김경중, 담당사무관 송명원, 담당 최중환

문서번호 농유 51000 -	취 급		시 장
시행일자 '99. 5.	보 존		
(제 1 안)	부 시 장	/	신종우
발 음 내부결재	산업경제국장	전 결	예산담당관 최영호
참 조	농수산유통과장	김경중	조과제도담당관 김호성
	기 안	송명원	법무담당관 심사필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협조</span>

제 목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 폐지 255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폐지 하고자 합니다.

붙임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폐지지침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 신 법무담당관

제 목 예규 폐지안 발령의뢰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 예규를 붙임과 같이 폐지 하고자 하오니 예규폐지를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폐지지침안 5부. 끝.

## 농 수 산 유통 과 장



#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폐지지침안

제1차	심사	1999.5.11	제 6 호
담당자	김성수(44444444)	김우담(444444)	김우담(444444)
이승복	김정환	김승영	

## 1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

※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.

라. 규제심사 :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

##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폐지지침안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은 이를 폐지한다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용자금에 대한 경과조치)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용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일까지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관리한다.